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28
----------	-----

2016. 12. 5.(월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봉회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5일

(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김봉회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이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,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변경(안 제1조)
- 위원회 간사를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(안 제2조제3항)
- 기타 조문 정비 등(안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경형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변경하고,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이 법률 제12738호(2014.6.3.)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른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,
- ‘지역개발과장’이 담당하는 위원회 간사를 ‘지명업무 담당과장’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 등에 따른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인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이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,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조례 제 528호

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충청북도지명위원회의”를 “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구성 등)”을 “(위원회 구성)”으로 하고, 제2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지명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지명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역개발과장”을 “지명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 9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구성 등) ① <u>충청북도지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부위원장은 균형건설국장이 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며, 간사는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 <u>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</u> ----- <u>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</u> -----.</p> 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<u>충청북도 지명위원회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지명업무 담당과장</u>-----.</p>

관 계 법 령

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

제91조(지명의 결정)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,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며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3.3.23.>

② 지명은 「지방자치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③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,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
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